

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 국고귀속 공고

[서울중량우체국 공고 제2026-9호]

서울중량우체국에서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[국고예의 귀속], 우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- 국고귀속일 : 2026.7.6.(월)
- 국고귀속대상

반송불능우편물	발송인	우편물 이관일	금 액(원)
6108101212473	고○숙	2025.6.25.(수)	200,000
6100701205895			100,000
합 계			300,000

- 국고귀속 범위: 보관기간 경과한 반송불능 우편물 습득금
- 환급기간: 공고기간 내 (2026.6.4.(목) ~ 2026.7.3.(금))
- 환급장소: 서울중량우체국 4층 지원과 방문
-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 - 실명확인증표
 - 본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
 - 본인 아닌 경우는 아래 서류 추가
 - 위임장(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-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량우체국 지원과(02-2239-0514)로 연락 바랍니다.

2026년 6월 4일

서 울 중 량 우 체 국 장